

대한민국과 슬로베니아 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

대한민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슬로베니아 공화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2018년 2월 20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과 슬로베니아 공화국 (이하 “슬로베니아”라 한다)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하였다:

제1부 일반규정

제1조 정의

이 행정약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협정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제2조 연락기관

1. 협정 제14조제2항에서 언급된 연락기관은:

가. 한국에 있어서는, 국민연금공단;

나. 슬로베니아에 있어서는,

- (1) 협정 제2조 제1항 나목 1호의 법령에 관하여는 슬로베니아연금장애보험공단,
- (2) 협정 제2조 제1항 나목 2호의 법령에 관하여는 슬로베니아건강보험공단.

2. 연락기관은 협정과 이 행정약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와 양국언어로 된 서식을 공동으로 결정한다.

제2부 가입에 관한 규정

제3조 가입증명서

1. 협정 제2부의 규정에 따라 한쪽 계약당사자의 법령이 적용되는 경우, 그 계약당사자의 실무기관은 사용자 또는 자영자의 요청에 따라 근로자 또는 자영자가 그 계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는다든 사실과 유효기간이 표시된 가입증명서를 발급한다. 이 증명서는 해당 근로자 또는 자영자가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강제 적용에 관한 법령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다.
2.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증명서를 발급하는 한쪽 계약당사자의 실무기관은 해당 근로자 또는 자영자 및 그 근로자의 사용자와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연락기관에 그 사본 1부를 제공한다.
3.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가입증명서는:
 - 가. 한국에서는 국민연금공단;
 - 나. 슬로베니아에서는 슬로베니아 건강보험공단에 의해 발급된다.
4. 협정 제9조에 언급된 예외는
 - 가. 한국에서는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연금공단;
 - 나. 슬로베니아에서는 노동가족사회평등부에 의해 합의된다.

제3부 급여에 관한 규정

제4조 청구서 처리

1. 한쪽 계약당사자의 실무기관이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급여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그 연락기관은 청구서가 접수된 날짜를 기재하여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연락기관에 그 청구서를 송부한다.
2. 한쪽 계약당사자의 실무기관은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실무기관이 청구인의 급여수급자격을 설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이용 가능한 서류를 청구서와 함께 송부한다.
3. 한쪽 계약당사자의 실무기관은 청구서에 포함된 청구인과 그/그녀의 가족에 관한 개인정보를 검증하고 그 정보가 증빙서류에 의하여 입증됨을 확인한다. 협정문 제1조 제1항의 사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추가하여 특정한 또는 특정 가능한 개인에 관한 다음의 식별자료 또는 정보가 협정 시행의 필요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다:
 - 가. 개인의 성명;
 - 나. 위치 정보;
 - 다. 온라인 식별 자료.
4. 이 협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실무기관은, 그 개인정보에서 언급된 개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내법령의 절차에 따라 그 사람에게 다음을 공개한다:
 - 가. 처리된 개인정보의 내용;
 - 나. 개인정보의 접수자;
 - 다. 개인정보의 사용기간, 그리고
 - 라. 개인정보 또는 요구된 자료의 이용 목적과 법적 근거.

5. 법령에 따라 이 협정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를 접수하는 계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은, 부정확하거나 오래된 개인정보 그리고 개인정보의 접수자인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의 요청을 이행하는데 필요치 않은 모든 정보를 정정, 접근제한 또는 삭제하며, 그 문제에 대하여 다른 쪽 계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즉시 통보한다. 이것은 개인정보 접수자인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으로부터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그러한 정정, 접근 제한 또는 삭제를 국내법령에 따라 직접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6. 한쪽 계약당사자의 실무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언급된 청구서 및 서류에 더하여 자국의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가입기간을 기재한 연락서식을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실무기관에 송부한다.
7.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실무기관은 청구인의 수급자격을 결정하고, 청구인과 한쪽 계약당사자의 실무기관에 그 결정을 통보한다.

제5조 급여의 지급

1. 실무기관은 자격 있는 수급권자에게 급여를 직접 지급한다.
2. 한쪽 계약당사자의 실무기관이 외화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환전율은 지급이 행해지는 날에 유효한 환율이 된다.

제4부 보칙규정

제6조 행정협조

1. 협정 제15조제1항에 따른 행정협조가 요청되는 경우 협조를 제공하는 실무기관의 일상적인 인력 및 운영비용은 보상되지 아니한다. 양 계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이 합의한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비용은 보상한다.
2. 한쪽 계약당사자의 실무기관은 요청이 있을 경우 청구인 또는 수급권자의 장애와 관련하여 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정보 및 서류를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실무기관에 무료로 제공한다.
3. 한쪽 계약당사자의 실무기관이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영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청구인 또는 수급권자에 대하여 의료검진을 요청한 경우,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실무기관은 한쪽 계약당사자의 실무기관의 요청에 따라 그 당사자의 규칙에 부합되게 그리고 의료검진을 요청하는 실무기관의 비용으로 의료검진의 실시를 주선한다.
4. 발생 비용에 대한 세부 명세서를 접수하게 되면, 한쪽 계약당사자의 실무기관은 이 조 제3항을 적용한 결과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을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실무기관에 지체 없이 상환한다.
5. 각 계약당사자의 실무기관은 요청에 의해 사망, 주소변동 및 혼인 상태의 변동을 포함하여 관련 수급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환경의 변화를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실무기관에게 통보한다. 세부적인 절차는 연락기관 간에 결정된다.

제7조 통계교환

연락기관은 이 행정약정 제3조에 따라 각 실무기관이 발급한 가입증명서의 수와 협정에 따라 각 기관이 지급한 급여에 관한 통계를 매년 교환한다. 이 통계에는 급여 유형별로 수급권자의 수와 지급된 총급여액에 대한 자료를 포함한다. 이 통계는 연락기관 간에 합의된 서식에 따라 제공된다.

제8조
발효

이 행정약정은 협정의 발효일에 발효되며, 동일한 존속기간을 가진다.

제9조
추가규정

1. 이 행정약정은 협정과 양국의 각각의 적용 가능한 법령의 틀 내에서만 이행된다.
2. 권한 있는 당국은 연락기관명의 변동사항을 서면으로, 행정약정의 개정 없이 상호 통보한다.

2019년 4월 18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슬로베니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의
권한 있는 당국을 위하여

슬로베니아 공화국의
권한 있는 당국을 위하여